한국측 보고에 대한 코멘트·질문

아오키 사토시(고베 대학)

함영주 선생님의 보고에서는 싱가포르 조약에서의 조정의 절차적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보고에서는 당사자의 독립성·자주성, 분쟁해결방법의 선택권 보장이 그 특성으로서 설명되며, 조약에 의한 조정은 중재나 소송 등과는 명확하게 구별되고, 조정인은 판단자가 아니라 분쟁해결의 촉진자 내지 보조자인 것으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조정에 의한 화해에의 집행력 부여에 대해서는 조정을 통한 합의는 임의 이행이 원칙이며, 집행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라는 점, 집행력 부여는 조정의 특성과는 상반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집행력 부여가 조정의 효력 강화나 조정 절차의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의 합의를 집행력 부여의 요건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증인에 의한 집행증서와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지, 조약에 의한 조정의 이용활성화를 해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있어서의 국제화해합의나 인증ADR에 있어서의 특정 화해에의 집행력의 부여에 대해서는, 야마다 아야 선생에 의한 일본측 보고에 대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당사자간의 합의(민법상의 화해)에 의해 이행의무가 정해진 경우,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행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얻는 등 집행권원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조약실시법 제정과 ADR법 개정법에 따라 소정의 조정에 의한 화해에 대하여 권리자는 법원에 의한 집행결정을 얻음으로써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조정에 의한 화해에의 집행력의 부여에는 판결절차인 이행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결정절차에 의해 간이 신속하게, 게다가 합의된 의무의 불이행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한 민법상의 화해와는 달리, 소정의 조정에 의한 화해합의에 대해 결정 절차에 의한 집행력의 부여가 인정됩니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제3자(국내의 조정에 대해서는 인증ADR)의 관여 하에 성립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그 합의의 진의성에 대해 제3자에 의해 점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의 집행결정으로 간이 신속하게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싱가포르조약 체결 시 조약 8조 1(b)에 의해 당사자가 합의한 한도에서 조약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유보선언을 하고 있으며, 국제화해합의에 대해서도 인증ADR에 있어서의 특정화해에 대해서도 민사집행의 합의가 있는 것을 집행력 부여의 요건으로 하고 습니다. 조정에 의한 화해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인 조정절차의 성질에 어긋난다는 견해도 있지만, 민사집행의 합의가 있는 것이 집행력 부여의 요건으로 되는 것으로, 조정에 의한 화해에 집행력을 부여할지를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는 조정절차에서 집행력 부여를 전제로 하는 합의를 목표로 할 것인지, 집행력 부여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합의를 목표로 할 것인지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 합의는 집행력 부여에 대한 합의라는 점에서 집행증서에 있어서 집행수락의 의사표시와 대비되지만, 조정에 의한 화해에 대해서는 민사집행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이행소송에 의하지 않고 결정절차를 거쳐 집행력이 부여되는 것이 정당화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인데요, 선생님의 보고에 있어서 집행력 부여는 조정의 특성과는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정에 의한 합의에 대해 집행력이 부여되지 않는 쪽이(합의가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 쪽이), 합의를 얻기 위해서, 혹은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만약 있다면, 어떠한 경우일까요. 또한 조정에 의한 합의에 집행력이 부여되게 됨으로써 조정 절차에 어떤 영향이 발생할까요?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